

1. 개정이유

민원인이 각종 서비스 신청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시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류 제출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의무 삭제(「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다. 법인에 소속된 개인(기술인력 등)에 대한 공동이용 동의절차 미비로 신청서 내 개인별 사전동의 서식 추가(「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6호의2서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라. 폐업시 타 법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등록증 분실·훼손 시 ‘미제출 사유 기재’ 후 등록증 제출 생략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6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6..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9호의6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

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 3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변경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하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을 각각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재직증명서를”로 하고,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변경 등록”을 “등록·변경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을 “자격·학력·경력”으로, “제9조제1

항제2호 각 목”을 “제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4호”를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을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재직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5조(「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서류”를 “서류(다만, 제 3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검사요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6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선박원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0부터 별지 12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u>		<u><삭 제></u>		
<u>및 등기부등본 각 1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u>행정</u>		③ -----		
<u>사정보시스템</u> 을 통하여 다음 각		----- <u>행정</u>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		<u>사정보시스템</u> 및 「전자정부		
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		<u>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u>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u>정보의 공동이용</u> -----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		-----		
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		1. -----		
의 경우		-----		

가.·나. (생 략) <u><신 설></u> <u><신 설></u> 2. (생 략) ④ ~ ⑥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u> <u>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u>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④ (생략)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 법 제6조제
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
조·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
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서 신설〉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
· 휴업 · 재개 신고) -----

다만,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 4. (생략)

<신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

--.

<삭제>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 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
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
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
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
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
다. <단서 신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 재개 신고) -----

--. 다만,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u>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u>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신청 등) ① ----- ----- ----- ----- <u>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변경 등록</u>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u>	2. <u>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u>
가. <u>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u>	<삭 제>
나. <u>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u>	<삭 제>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
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③ (생략)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
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

② -----

-----.

-----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
가기술자격증의 사본 및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
금가입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

1. ~ 4. (현행과 같음)

5.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①

----- 별지 제5

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
 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
 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 현
 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
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
 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
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
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2. (생 략)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

호서식-----

등록·변경 등록 -----

-----.

1. (현행과 같음)

2. -----

자격·학력·경력 -----

----- 제9조제1

항제2호-----

- ② -----

-----.

---- 사업자등록증명, 국가기

술자격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

자격증의 사본 및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

자증명서, 재직증명서를 ---.

1. · 2. (현행과 같음)

3. -----

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u>국가기술자격증</u> ③ (생략)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u>제2호 및 제4호</u>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u>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u>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생략)	----- <u>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대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제2호, 제4호 및 제5호</u> ----- ---- <u>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재직증명서를</u> ---. 1. ~ 4. (현행과 같음) 5. <u>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u> ③ (현행과 같음)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략)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1.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u>서류</u>	1. ----- ----- <u>서류(다만, 제 3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검사요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u>

③ ~ ⑤ (생략)	<u>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본</u> <u>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생략)	제3조(사업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선박원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 2. (생략) 제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 ④ (생략)	제4조(사업의 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u> 1. 2. (현행과 같음) 제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 ----- ----- ----- ----- -----. <u>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미제출 사유를 작성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별지1]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대표	성 명				생년월일
행정사	주 소				
대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행정사	명 칭				
법인	주 소		전화번호		
법인 구성원	성 명	행정사 종류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기관 및 기간)	
		(외국어 종류:)			
소속					
행정사					
분사무소	명 칭	주 소	상근 법인구성원		

「행정사법」 제2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각 1장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행정사법인 정관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3. 법인설립인가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법인 설립인가증을 확인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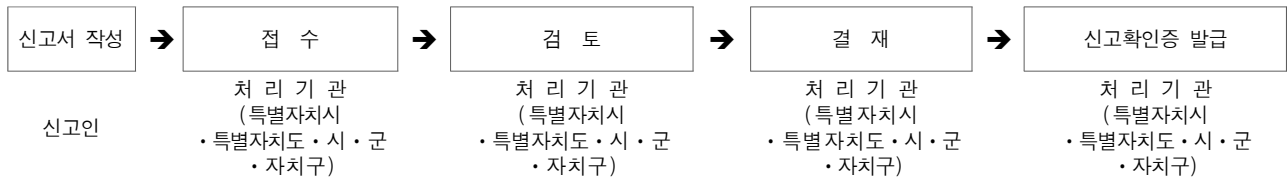
* 담당 공무원의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명칭 또는 상호	설립일자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등록사항	신청구분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신규등록 신청 ☐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기술인력	총 명(「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말함)
	변경사유 (변경등록 신청 시 기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의 경우: 기술인력(「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을 말합니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기술인력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시에는 담당 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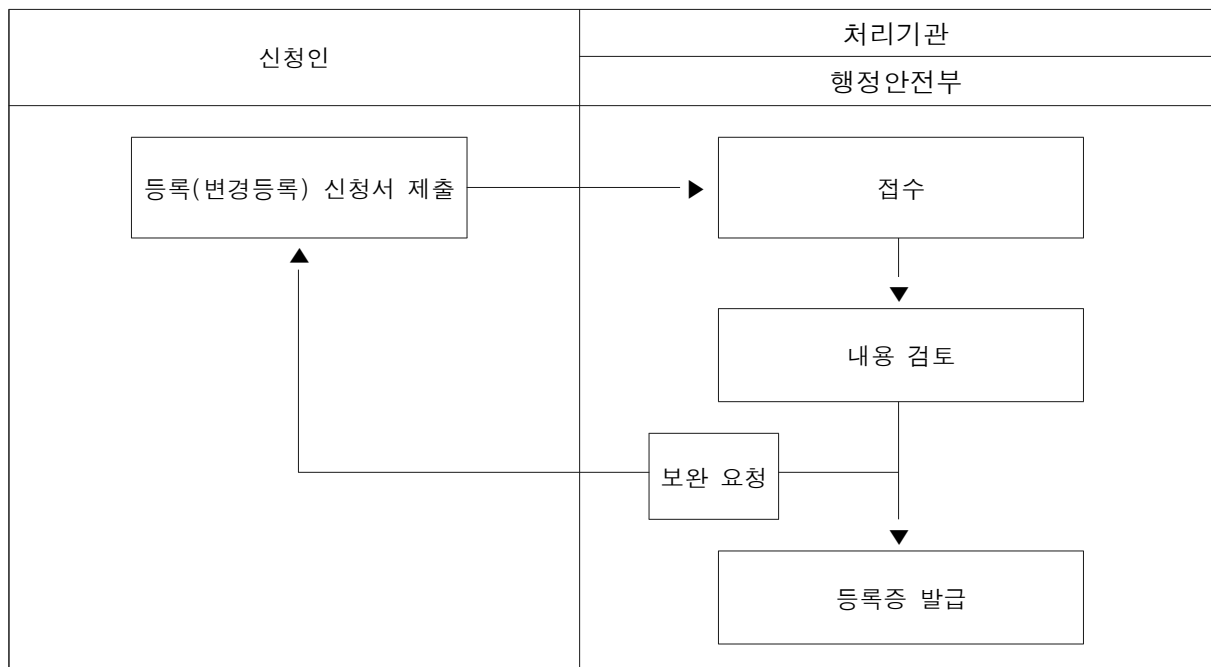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행정안전부
이용사무(이용목적)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민원처리시까지(30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별지3]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 구분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자본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3.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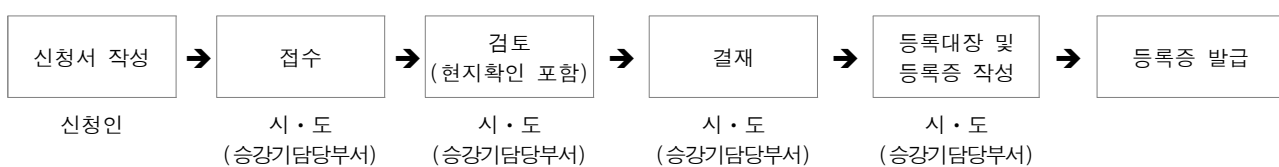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폐업
제조업 또는 수입업 [] 휴업 신고서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폐업일, 휴업일 또는 재개일				
	등록 구분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신고현황	구분					폐업·휴업 사유			
	[] 폐업 [] 휴업								
	휴업기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미제출 사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붙임서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	기안 및 결재 시·도 (승강기담당부서)	
				→	회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 고속 승강기 [] 중저속 승강기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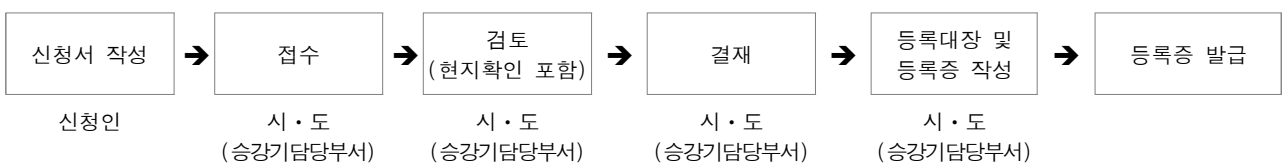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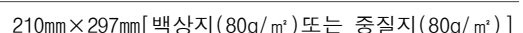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신고현황은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
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처리절차



[별지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등록 · [] 변경 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등록) 15일(변경 등록)
------	-----	-----	----------------------------

신청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번호(변경 등록 시)	법인 설립일(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등록사항 (등록 신청)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1) 풍수해 부문 [] 2) 지진 부문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기술인력 총 () 명 기술자격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변경 등록 사항 (변경 등록 신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변경 사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등록 · [] 변경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2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80g/㎡)]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제26조의2에 따른 수수료
	변경 등록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등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1.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2.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 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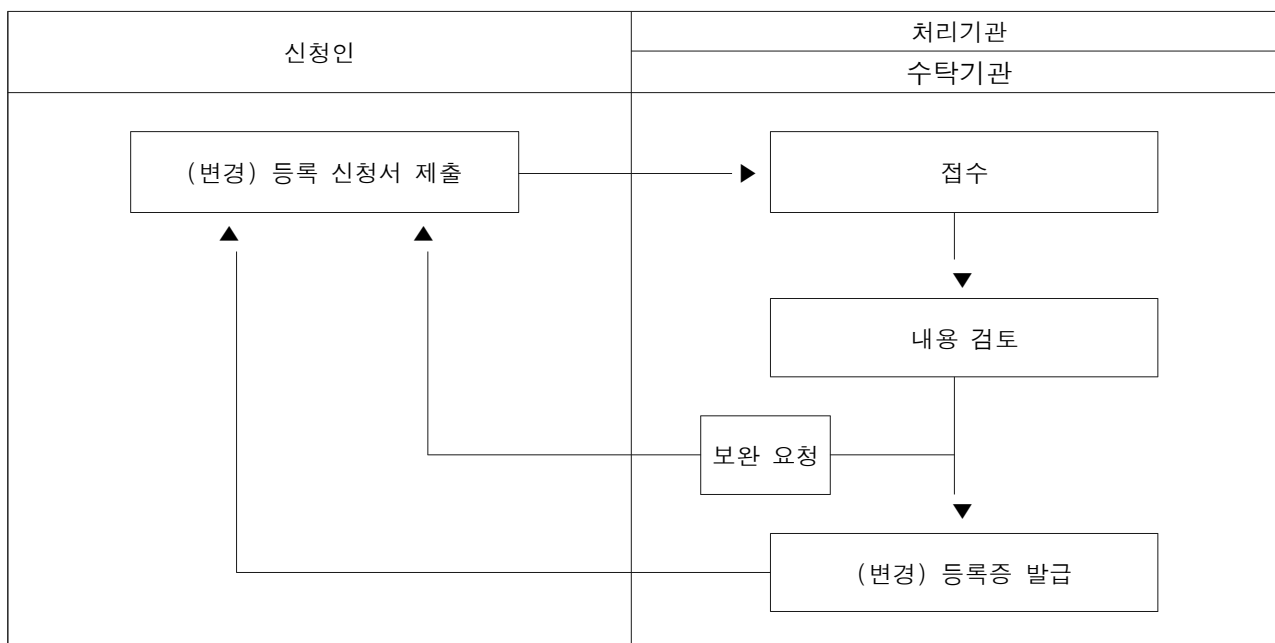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이용사무(이용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민원처리시까지(등록 20일, 변경등록 15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 현황을 알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지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종전 대행자	등록번호	제 호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한 대행자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사유	[] 상속 [] 양도·양수 [] 분할·합병		
승계사유 발생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2쪽 참조
------	-------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기술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기술인력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 사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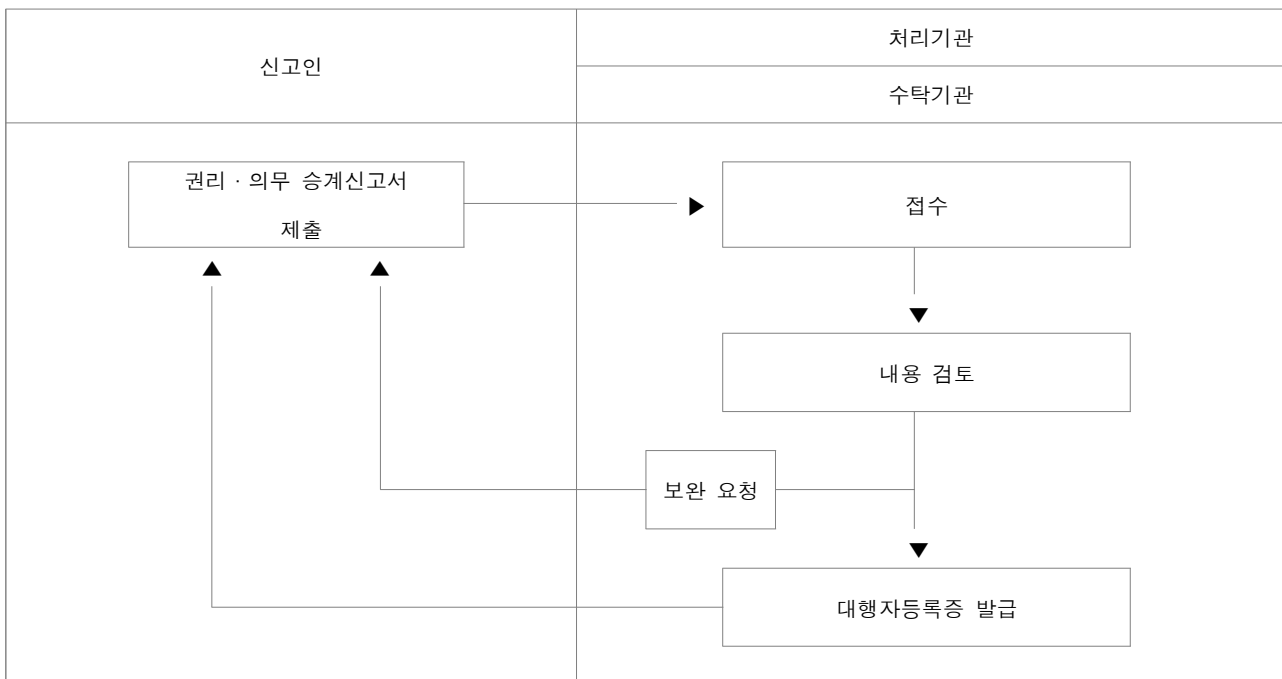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이용사무(이용목적)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1년(예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 현황을 알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

[별지9]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신청 내용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	전화번호	
	성능검사 범위 ☐ 지진가속도감지기 ☐ 지진가속도기록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진 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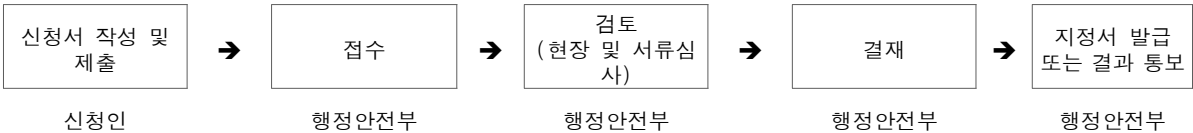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항목은 제외)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2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4.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검사요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검사요원의 재직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검사요원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쪽)
(검사요원별 각 1부를 작성·제출해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행정안전부
이용사무(이용목적)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 신청 (검사요원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민원처리시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검사요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업 [] 면허신청서
[]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신고 사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영업구역		
	선박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운항 횟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신청,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3.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선박원부(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만으로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제2호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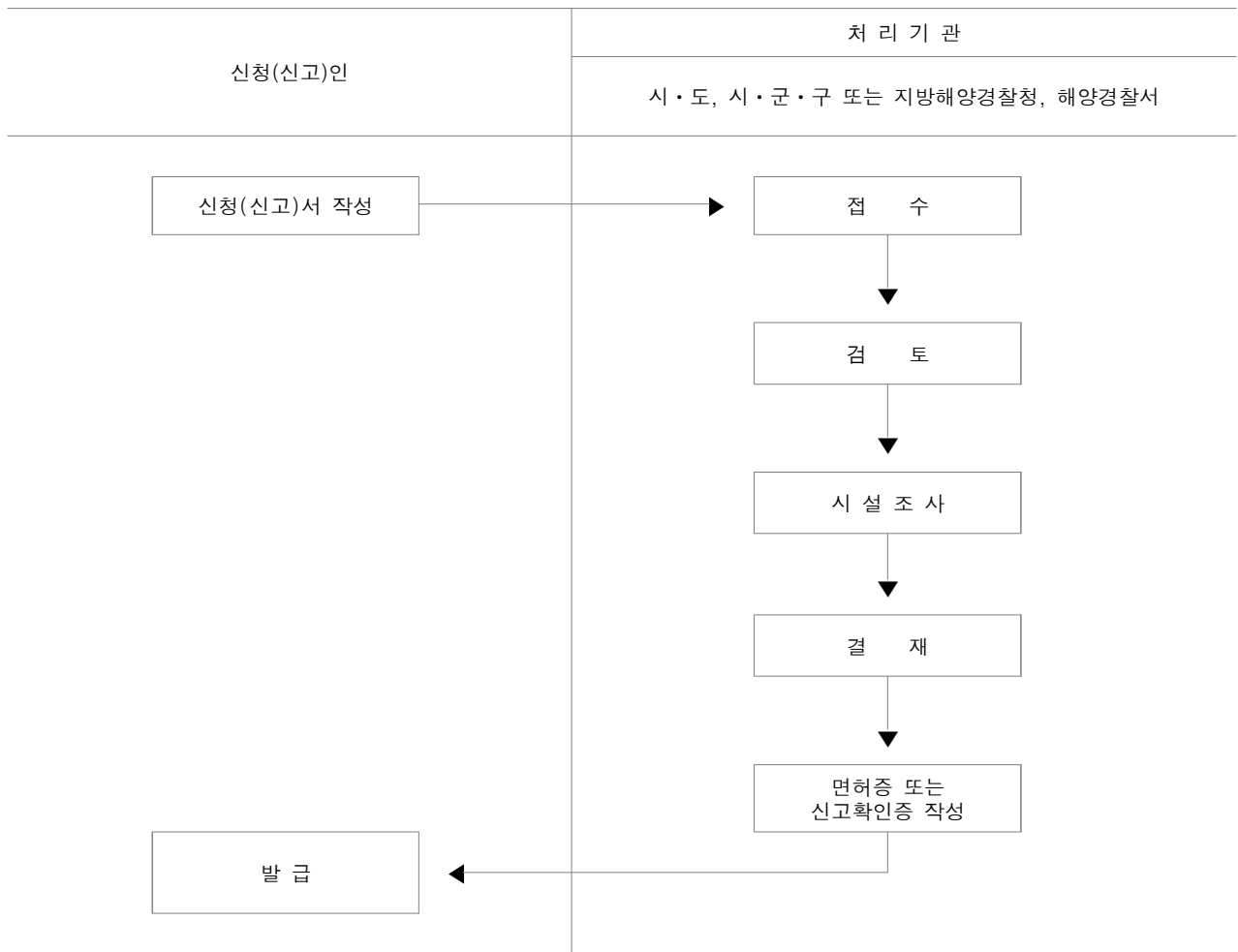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승계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인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영업구역 포함)	
승계의 시기		
승계의 사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 제출서류	상속의 경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합병의 경우	1. 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법인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3.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	
	그 밖의 경우	1. 해당 사유별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양도·양수의 경우	1.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합병의 경우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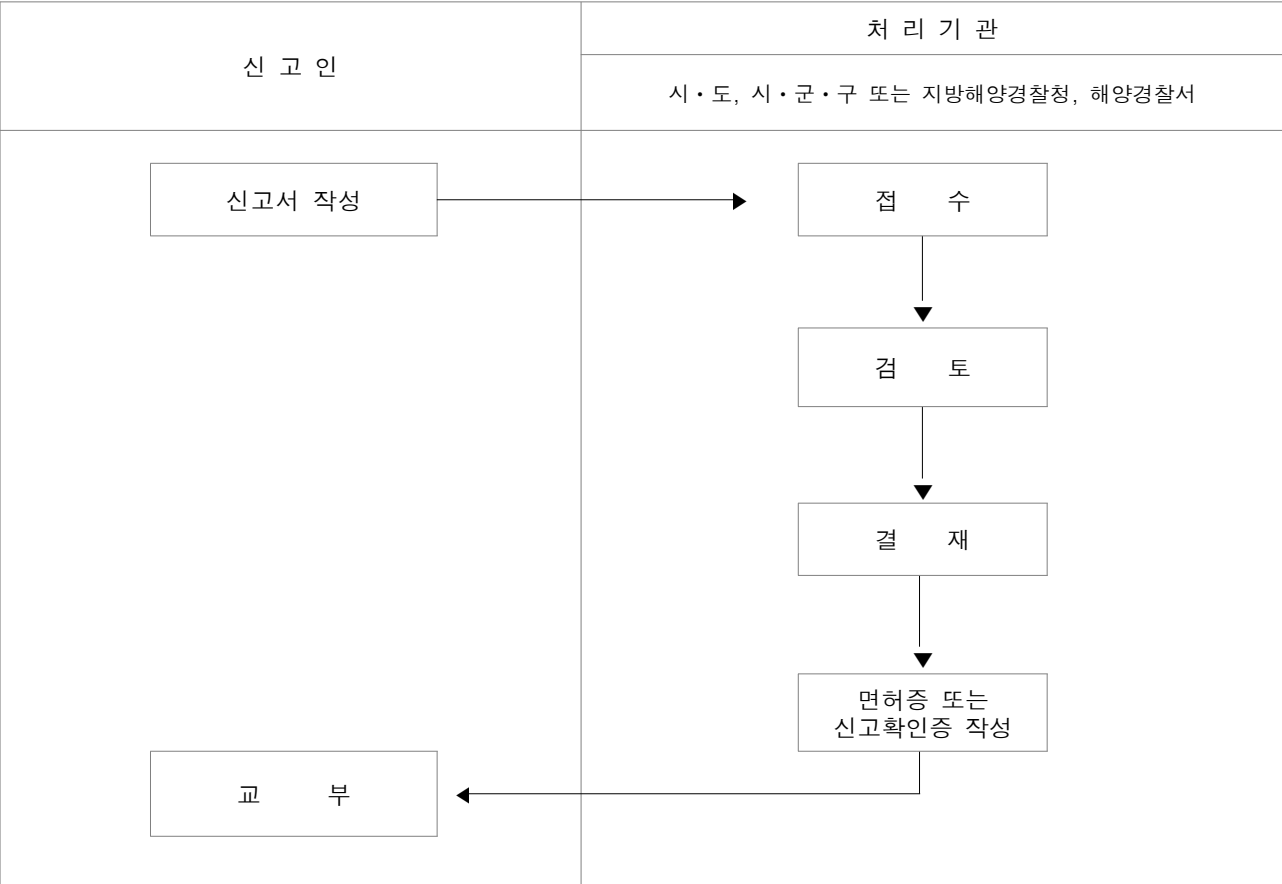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12]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운항중단, ☐ 재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영업구역	
	선박명세	
	휴업·폐업·운항중단·영업재개 예정일	
	휴업·운항중단 기간	
	사 유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미제출 사유(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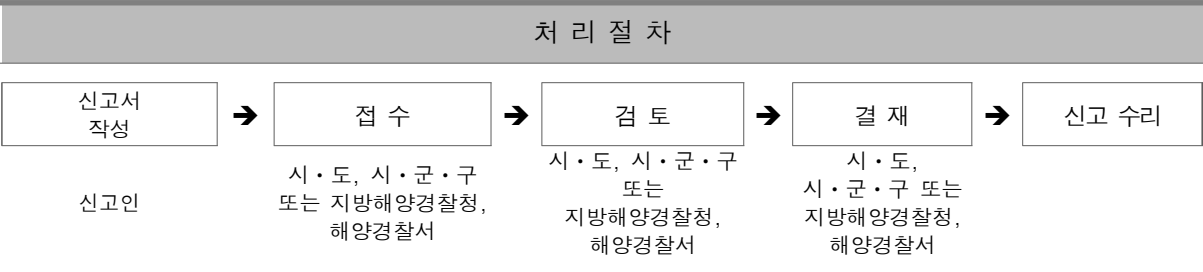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